

수신: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

발신: 넬슨 J. 페레즈 주교

날짜: 2019 년 7 월 9 일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Holy Love Ministries)에 관한 교령의 법령의 확인

최근에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Holy Love Ministries)라고 알려진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신자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제기 되었습니다. 클리블랜드 교구장 넬슨 J.페레즈 주교님께서서는 리차드 G. 레논 주교님께서 2009 년 11 월 11 일에 사도좌의 지시에 따른 응답으로 공포하신 법령의 규정들을 확인 하셨습니다. 가칭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의 일치” (Confraternity of the United Hearts of Jesus and Mary) 는 가톨릭 교회의 인준은 받은 단체가 아니며, 그 단체에서 주장하는 발현과 계시는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며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Holy Love Ministries) 활동지에서의 성사 거행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영성적, 전례적, 종교적 혹은 신심 행위의 목적으로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Holy Love Ministries) 활동지 에서의 모임들들에 참여하는 행위를 중단 할 것을 강력히 권고 합니다.

2009 년 11 월 11 일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에게,

지난 몇 년동안 가칭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Holy Love Ministries) 혹은 가칭 “거룩한 사랑의 종 선교회” (Missionary Servants of Holy Love)로 알려진 단체가 클리브랜드 지역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이 단체와 관련된 예전의 명칭들은 가칭 “신앙 활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 (Our Lady Protectress of the Faith Movement), 혹은 가칭 “자비의 프로젝트” (Project Mercy), 혹은 가칭 “성모 마리아의 기도의 집” (Mary’s House of Prayer)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말하는 성지를 개발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계속해서 모금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로마 교황청에서는 나에게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의 활동에 대해서 조사하고 적합한 판단을 내리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분야의 전문 신학자와 논의하고,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의 지도자와의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한 뒤에, 그리스도 신앙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다음의 법령(Decree)을 공포합니다.

나는 본당 사목구 주임들, 본당 사목구 주임 서리들, 본당 사목을 위임받은
평신도들이 해당 본당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 법령을 알리기를 당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Richard Lennon

클리브랜드 교구장 주교

2009 년 11 월 11 일

법령 (Decree)

하느님의 이름으로

클리브랜드 교구에 있는 모든 신자와 성직자에게

클리브랜드 교구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의 생활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나의 직분에 따라 (교회법 제 387 조, 392 조, 223 조 2 항); 그리고

로마 교황청의 지시에 따라 Maureen Sweeney Kyle 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성모발현의 경우에 있어서 명확하게 행동하도록; 그리고

Maureen Sweeney Kyle 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성모발현과 성모계시의
신학적 내용을 검토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분야의 전문 신학자와 상의한 뒤에
(교회법 747 조 2 항);

클리브랜드 교구장 주교인 나, Richard G. Lennon 은,

1. Maureen Sweeney Kyle 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성모발현과 성모계시는 그
근원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님을 선포한다.

2. 교회 관할권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제들에게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의 지역에서 어떠한 성사활동도 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3. 클리브랜드 교구 내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의 지역에서 어떠한 종교적, 전례적, 영성적, 혹은 신심적 목적의 모임을 중단하도록 경고한다 (교회법 212 조 1 항, 3 항, 교회법 214 조).

4. 가칭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의 일치” (Confraternity of the United Hearts of Jesus and Mary)는 클리브랜드 교구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신자들의 모임으로, 법적으로 “가톨릭” (Catholic)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며, 가톨릭 단체로서 자신을 대표하지 못한다 (교회법 216 조).

이 법령은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

주님의 해 2009 년 11 월 11 일에 클리브랜드 교구 사무처에서

Richard Lennon

클리브랜드 교구장 주교

사무처장: Sr. Therese Guerin Sullivan, SP

공증관: Eileen Von Alt